

광주광역시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증개정 조례안

1. 제안사유

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등록관련 수수료를 신설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관련업자 등록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증명등 수수료 중 다음사항 반영(안 제3조 중 “별표1”)

- 석유사업법 제9조, 제31조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

· 「석유판매법(주유소) 등록신청」 외 1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46조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항목 신설

· 「유통관련업자 등록」 외 3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삭제

-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 삭제(주민등록사무편람 177쪽 참고)

·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삭제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구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

(안 제8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검토의견

안 제3조 중 별표1에 관한 의견입니다.

별표1 중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총 8종으로서 삭제된 사항은 2종이고 신설된 사항은 6종입니다.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서 삭제된 2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삭제된 사항 중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업무 처리는 수용가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일선동장에게 제출하면 일선 동에서는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한전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신청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거주가구수 확인 송부에 확

인증을 첨부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청행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제증명 등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업무 처리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반적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아 이를 수수료 대상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폐지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또는 시설화장장·시설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시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는 부과했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를 수수료 대상사무에서 삭제하자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안이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 6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하여(구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이에 부과한 수수료도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하였으나,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이들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이들 사무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수수료를 문화관광부령이나 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으나(제26조), 개정된 동 법률에서는 음반 등 제작업 또는 음반 등 배급업의 신고, 이들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 그리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신고 및 등록사무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음반비

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감면대상자의 하나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들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체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자체가 삭제되었거나 수수료 징수기관의 이관에 의한 것이고, 또한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